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정진술, 송아량, 권영희,
이정인, 이광호, 김정대,
김종무, 송명화, 오현정,
이영실, 김태호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 및 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,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 외부위탁 시행하고자 할 때 서울기술연구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 제고는 물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목적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함(안 제1조).
- 나. 기존 조사·연구 수행으로 한정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 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시와 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

개발·연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연구원의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
(안 제4조의2)

라. 원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연구분야”를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”을 “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”로, 제2호 중 “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”을 “유지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”로, 제3호 중 “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”을 “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”로 하고, 제4호는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5. 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8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조사·기술개발·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
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
3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
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

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”를 “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연구분야) ① 연구원은 <u>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난 예방 및 <u>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</u> 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<u>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</u> 3. <u>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</u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사업) ①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업을 --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 2. ----- <u>유지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 3. <u>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 4. <u>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 5. <u>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	<p>6. <u>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7. <u>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8.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</u></p>
<p>4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	<p>9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4조의2(조사·기술개발·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. 과제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원장은 연구원을 <u>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지 여부</p> <p>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</p> <p>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